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1~5차 비상경제대책 및 1·2차 추가경정예산 중심

대한민국정부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1~5차 비상경제대책 및 1·2차 추가경정예산 중심

대한민국정부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1~5차 비상경제대책 및 1·2차 추가경정예산 중심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브리핑'(www.korea.kr)과
청와대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전자파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minwon.go.kr, 전화 1588-2188)에서도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박양우 **제작협력** (주)대통기획 **발행일** 2020.6

차 례

Ⅰ 정책 대응 노력

■ '방역이 곧 경제'라는 인식 아래 철저한 방역 적극 지원 — 07
■ 피해극복 지원, 민생안정 등을 위한 실물피해 대책 신속 추진 — 07
■ 선제적 기업 자금애로 해소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08
■ 피해 사각지대 해소, 고용안정 등을 위한 추가 보강대책 지속 마련 — 08

Ⅱ 정책 대상별 지원대책 주요 내용

일반국민(소득 지원)
■ 긴급재난지원금 — 14
■ 저소득층 소비쿠폰 — 16
■ 긴급복지 — 17

일반국민(육아 지원)
■ 아동돌봄쿠폰 — 18
■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 19
■ 가족돌봄휴가 + 돌봄비 지원 — 20

고용주(고용유지 지원)
■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신설 — 22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확대 — 23
■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 30

고용주(신규채용 지원)
■ 청년 디지털 일자리 — 31
■ 청년 일경험 지원 — 32
■ 중소 · 중견기업 채용보조금 — 33

소상공인(긴급자금 지원)
■ 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 34
■ 대출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 — 36
■ 피해 점포 재기 지원 — 38

소상공인(부담 경감)
■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 39
■ 전기요금 부담 경감 — 40
■ 4대보험료 부담 경감 — 42

구직자 지원
■ 비대면 · 디지털 정부일자리 — 43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44
■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 46

취약계층 지원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48
■ 근로자 생계비 융자 — 50
■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 52

Ⅲ 비상경제대책 쟁점과 설명(Q&A)

■ 1차 50조 · 2차 100조 민생금융지원 대책 (1 · 2차 비상경제회의) — 54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3차 비상경제회의) — 59
■ 수출기업 지원 및 내수 활성화 대책 (4차 비상경제회의) — 67
■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5차 비상경제회의) — 68

참고 자료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 74
■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 75
■ 한국판 뉴딜 주요 과제 — 76
■ 코로나19 관련 누리집 — 77

I

정책 대응 노력

- ‘방역이 곧 경제’라는 인식 아래 철저한 방역 적극 지원
- 피해극복 지원, 민생안정 등을 위한 실물피해 대책 신속 추진
- 선제적 기업 자금애로 해소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피해 사각지대 해소, 고용안정 등을 위한 추가 보강대책 지속 마련

정책 대응 노력

● 정부는 방역을 통한 사태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 민생안정 및 일자리지키기에 전력

- 위기대응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비상경제회의(대통령 주재)를 출범하여 다섯 차례 회의 등을 통해 선제적인 긴급조치 완료

총 250조원 규모(GDP 13.1% 수준) 지원대책 마련		
실물피해 대책 : 32조원	**금융안정 대책 : 175조원**	**추가 보강대책 : 46조원**
(1단계) 업종 · 분야별 긴급대책 < 4조원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 135조원 + α >	긴급재난지원금 < 14.3조원 >
(2단계) 민생 · 경제 종합대책 < 16조원 >	※ 자금지원 / 금융시장 안정	사회보험료 감면 < 0.9조원 >
(3단계) 추경 < 11.7조원 >	기간산업안정기금 < 40조원 >	고용안정 패키지 < 10.5조원 >
		수출 · 벤처기업 지원 < 10.1조원 >
		기타 업종 · 분야별 긴급지원 등

※ 250조원 = 32 + 175 + 46 - 8＊ + 5＊＊

＊ 8조원 :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중복분 차감
＊＊ 5조원 : 지역사랑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한은 국고채 매입 별도 포함

※ 사회보험료 · 제세금 등 납부유예, 대출 · 보증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 349조원

- 비상경제 2단계 대응체계로서 상시적 위기관리 · 대응을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부총리 주재, 경제중대본) 본격 가동

＊ ❶경제상황 · 리스크 점검 ❷既발표 대책의 이행 및 현장애로 점검 ❸추가 대책 마련 등
'정부 핵심대책 결정 또는 중요사안 결단 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개최'

1 '방역이 곧 경제'라는 인식 아래 철저한 방역 적극 지원

● 신속한 예비비 ·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선제 · 특별방역을 재정적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 ❶핀셋형 유입 차단 ❷유례없는 신속진단 ❸맞춤형 의료서비스 ❹투명한 정보공개 ❺세계 최초 승차진료 도입 등 혁신 ICT 방역시스템 등
- 기정예산 232억원, 예비비 9,122억원, 추경 2.1조원 등

● 감염 확산 방지 ·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총력

- **(1차 긴급수급조정조치)** 생산량 · 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처 등 신고 의무화
- **(2차 긴급수급조정조치)** 생산량의 50% 공적공급 의무화, 수출제한(생산량의 10%)
-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❶공적공급 확대(50 → 80%) ❷수출 전면 금지 ❸마스크 구매 3대 원칙 등
  * 1주 1인 2매 구매제한 / 요일별 5부제 /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도입
- **(수급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대리구매 범위 확대(어린이 · 어르신 등), 생산 인센티브 부여 등

2 피해극복 지원, 민생안정 등을 위한 실물피해 대책 신속 추진

● 피해 우려 업종 · 분야별로 긴급지원 대책을 단계적 발표 · 추진
- 세정 · 통관, 중기 · 소상공인, 자동차, 관광 · 외식, 항공 · 해운, 지역경제, 수출기업 등

●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민생안정 ·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정부 · 유관기관 정책공조를 통한 종합 패키지 대책 마련

[민생안정]
- 임대료 경감 3종 세트(❶자발적 인하액 50% 세액공제 ❷정부 및 ❸공공기관 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 영세 개인사업자(연 매출액 8천만원 이하)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 경감(~'20년말)
- 소상공인 ·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지원 확대,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5조원) 등
- 어린이집 휴원 등에 따른 가족돌봄비용 한시 지원

[경제활력 보강]
- 승용차 개소세 70% 한시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 1차 추경(11.7조원)

- **(방역체계 보강 · 고도화)** 음압병상 ·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의료기관 손실보상 · 융자 지원, 입원 · 격리치료자 생활 지원 등
- **(피해극복 지원)** 휴 · 폐업 점포 재기 지원, 고용유지 영세사업장 임금 보조,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등
- **(민생 · 고용안정 지원)** 소비쿠폰 · 특별돌봄쿠폰 지급, 긴급복지 지원, 일자리 사업 확대 등
- **(지역경제 회복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피해지역 고용 특별지원 등

3 선제적 기업 자금애로 해소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긴급 자금소요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한 '135조원 + α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가동

[기업 자금지원]

- 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1단계 : 초저금리 특별금융)** 12조원 + 4.4조원 추가 / **(2단계)** 10조원]
- 영세 소상공인 긴급자금 전액보증(3조원), 소상공인 등 연체채권 매입(2조원)
- 중소 · 중견기업 대출(21.2조원) · 보증(7.9조원) 지원, 중기 · 소상공인 특례보증(5.5조원) 등

[금융시장 안정화 장치]

-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10 + 1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10.7조원)
- 회사채 발행 지원(P-CBO, 11.7조원) · 신속인수제도 시행(2.2조원) · 차환발행 지원(1.9조원)
- CP · 단기사채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27조원) 등

- 일자리 · 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가동
  - 항공 · 해운 등 대상업종에 대해 고용유지 ·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조건으로 유동성지원 · 자본확충 등 기업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지원

4 피해 사각지대 해소, 고용안정 등을 위한 추가 보강대책 지속 마련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 보장을 위해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14.3조원) : 2차 추경(12.2조원)
-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10.1조원 규모, 286만명 지원)
  - **(고용유지 지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특별고용지원 업종 확대 등
  -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생계비 융자 확대 등
  - **(긴급일자리 창출)** 비대면 · 디지털 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청년 일경험 일자리 등
  - **(실업자 지원)** 구직급여 확대, 직업훈련 확대, 취업성공 패키지 확대 등
-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보험료 감면 및 납부유예
  - 건강보험료 감면 확대(보험료 하위 20 → 40%)
  -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30% 감면 및 고용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납부유예 등
- 선결제 · 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수출 · 벤처기업 지원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추가 대책 지속 강구

  * 공공부문 선결제 및 건설투자 당겨집행, 민간부문 자발적 선구매 인센티브 등

  * 수출기업 보험 · 보증료 감면 및 만기연장,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5조원 + α) 등

Ⅱ 정책 대상별 지원대책 주요 내용

- 일반국민
  - 소득 지원
  - 육아 지원
- 고용주
  - 고용유지 지원
  - 신규채용 지원
- 소상공인
  - 긴급자금 지원
  - 부담 경감
- 구직자 · 취약계층
  - 구직자 지원
  - 취약계층 지원

정책 대상별 지원대책 주요 내용

일반국민

소득 지원

▸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내용 : 14쪽]
- 소득 ·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용 · 체크카드)** 5.11(월)부터 카드사 누리집 · 앱을 통해 5.18(월)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선불카드 · 상품권) 5.18(월)부터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저소득층 소비쿠폰** [세부 내용 : 16쪽]
- 기초수급자*이거나 법정 차상위계층이라면?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최대 52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상품권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 · 문의)**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긴급복지** [세부 내용 : 17쪽]
- 실직 · 휴직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졌다면?

☞ 4인가족 기준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합니다(최대 6회).

※ **(신청 · 문의)** 주소지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월소득 356만1,881원 이하(4인가족 기준) 신청 가능

육아 지원

▸ **아동돌봄쿠폰** [세부 내용 : 18쪽]
- 만 7세 미만 자녀를 두었다면?

☞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돌봄쿠폰(상품권 등)을 지원합니다.

※ **(문의)**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지자체별로 신청 방법, 지원 시기 상이

▸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세부 내용 : 19쪽]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라면?

☞ 전문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 자녀를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이용자 부담률을 37.6% 낮춥니다.

※ **(신청)** 누리집(idolbom.go.kr) 또는 고객센터 ☎1577-2514

▸ **가족돌봄휴가 + 돌봄비 지원** [세부 내용 : 20쪽]
-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할 상황이라면?

☞ 최대 10일 무급휴가 가능 + 하루 5만원(최대 10일) 돌봄비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고용주

고용 유지 지원

▸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신설** [세부 내용 : 22쪽]
- 휴업수당 先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다면?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주가 먼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 지원하는 정책

☞ 융자 먼저 받아 휴업수당 지급하고, 상환은 나중에 고용유지지원금 받고 나서 진행

※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확대** [세부 내용 : 23쪽]
- 코로나19 피해가 크다면?

☞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합니다.

* 기존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 지원

▸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세부 내용 : 30쪽]
- 노사가 함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 한다면?

* (예시) 사측 고용안정 보장, 노동자측 임금감소 수용

☞ 임금감소분의 일정 비율(예 : 50%) × 6개월분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신규 채용 지원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세부 내용 : 31쪽]
- IT 관련 인력*이 필요하다면?

*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 · 관리 등

☞ IT 관련 직무 청년 채용 시 최대 월 180만원의 임금을 지원합니다.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대 6개월

※ **(지원 조건)** 주 15 ~ 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 **청년 일경험 지원** [세부 내용 : 32쪽]
- 채용 여력이 부족하다면?

☞ 청년 신규 채용 시 최대 월 80만원의 임금을 지원합니다.

* 최대 6개월

※ **(지원 조건)** 주 15 ~ 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 **중소 · 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세부 내용 : 33쪽]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 이직한 직원을 채용했다면?

* 특별고용지원 업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면세점업 등

☞ 최대 월 100만원의 임금을 지원합니다.

* 최대 6개월

※ **(지원 조건)** 주 15 ~ 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등

▸ **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세부 내용 : 34쪽]
- 신용등급 무관, 피해 소상공인 누구에게나 1.5%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 1~3등급, 한도 3천만원, 14개 취급은행
*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1~6등급), 소진공 경영안정자금(4~10등급)은 신청 종료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전 등급, 한도 1천만원, 7개 취급은행*
*KB · NH · 신한 · 하나 · 우리 · 기은 · 대구은행 + 참여 희망 지방은행(6월중 확대 추진)

▸ **대출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 [세부 내용 : 36쪽]
-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면?
☞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를 지원합니다.

※ **(신청 · 문의)** 대출받은 금융기관
* 2020년 3월 2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만 적용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및 부동산 매매 · 임대 등 일부 기업대출 제외

▸ **피해 점포 재기 지원** [세부 내용 : 38쪽]
-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봤다면?
☞ 최대 300만원의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확진자 경유 300만원, 장기휴업 100만원 지급
* 지자체별로 신청 방법 등 별도 공지 예정

부담 경감

▸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세부 내용 : 39쪽]
- 연매출 8천만원 이하라면?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 수준으로 감면합니다.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 **전기요금 부담 경감** [세부 내용 : 40쪽]
- 대구 · 경북에서 사업하고 있다면?
☞ 전기요금 50% 감면 + 3개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는 대구 · 경북 이외 지역도 신청 가능

※ **(신청 · 문의)** 전기요금 납부처(한국전력, 관리사무소 등)

▸ **4대보험료 부담 경감** [세부 내용 : 42쪽]
- 4대보험료가 부담된다면?
☞ 산재보험 · 건강보험 보험료 최대 50% 감면
산재보험 · 고용보험 3개월 납부유예
* 30인 미만 사업장 납부유예 신청 가능

※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보험료 감면의 경우 정부가 대상을 선별해 자동 적용

구직자 · 취약계층

구직자 지원

▸ **비대면 · 디지털 정부일자리** [세부 내용 : 43쪽]
- IT 업종 구직중이라면?
☞ 도로데이터 구축 등 공공부문 디지털 일자리 5만개를 만들겠습니다.

※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주 40시간 미만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청년일자리 중심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세부 내용 : 44쪽]
-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이라면?
☞ 월 50만원 × 6개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세부 내용 : 46쪽]
- 정부 취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 진로 설정, 취업 알선, 구직수당 지급까지 단계별로 맞춤 지원합니다.

※ **(신청 · 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취약 계층 지원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내용 : 48쪽]
-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 월 50만원씩 3개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프리랜서(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가사 등), 무직휴급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 영세 자영업자 등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 **근로자 생계비 융자** [세부 내용 : 50쪽]
- 병원비 · 학자금 등이 갑자기 필요하면?
☞ 금리 1.5% 한도 3천만원 긴급융자를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세부 내용 : 52쪽]
-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 방역, 살림재해 예방 등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를 공급하겠습니다.

※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주 30시간 미만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입 배경

-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팬데믹)에 따라 세계경제 · 국내경제가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
  - 특히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 ·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 · 자영업자 · 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
  -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 지원에 한계
-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제공하여 국민생활 안정 및 경제회복 지원 필요

주요 내용

- **(지원 범위)** 전 국민 2,171만 가구(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 가구 기준)
  * "부양자 + 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법상 가구 기준 적용
- **(지원 수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만 ~ 100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 수준	400,000원	6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신청 방법

* 신용 ·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수단에 따라 신청 방법 등이 다름

- **(신용 · 체크카드)** 5.11(월)부터 카드사 누리집 · 앱을 통해 5.18(월)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용 · 체크카드 신청은 6.5(금)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는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신청만 가능
  - 충전금은 신청일 다음날에 해당 카드에 지급
- **(선불카드 · 상품권)** 5.18(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하는 현장에서 선불카드 ·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추후 수령이 가능한 장소 · 일시 안내

- **(신청 요일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점을 고려,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
  *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신용 · 체크카드의 경우 누리집·앱 신청은 5.16(토)부터, 은행 창구 방문 신청은 5.25(월)부터 '신청 요일제' 해제

신청 · 지급 현황

- **(총괄)** 6.7(일) 24시 기준 총 2,160만 가구(99.5%), 13조 5,908억원 신청 · 지급 완료

※(6.6. 24시 대비) 총 3천 가구, 15억원 증가

지급대상	신청 · 지급 실적				
	소계	현금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선불카드
2,171만 가구 (100%)	2,160만 (99.5%)	286만 (13.2%)	1,463만 (67.4%)	156만 (7.2%)	255만 (11.8%)
14조2,448억원	13조5,908억원	1조3,012억원	9조6,095억원	1조241억원	1조6,560억원

- 시 · 도별 신청 · 지급 현황

(단위: 가구, 백만원)

구 분	신청·지급 가구수					금 액
	소계	현금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선불카드	
계	**21,601,216**	**2,861,061**	**14,627,183**	**1,561,821**	**2,551,151**	**13,590,762**
서 울	4,049,486	406,511	3,045,732	23,779	573,464	2,567,511
부 산	1,440,792	239,184	914,750	12,693	274,165	922,768
대 구	1,001,984	147,932	624,813	85,513	143,726	658,020
인 천	1,208,266	144,198	808,212	255,856	0	794,786
광 주	594,722	76,174	404,571	113,977	0	389,588
대 전	610,869	72,657	502,161	13,161	22,890	396,237
울 산	458,723	42,829	331,420	5	84,469	310,079
세 종	132,176	8,652	112,806	12	10,706	90,621
경 기	5,273,400	490,794	3,798,809	399,227	584,570	3,160,963
강 원	683,475	118,707	399,961	130,540	34,267	422,842
충 북	701,475	109,932	452,355	100,944	38,244	441,608
충 남	931,815	151,165	616,354	50,956	113,340	585,518
전 북	789,073	163,952	428,931	27,936	168,254	495,567
전 남	838,446	196,895	404,948	186,626	49,977	515,557
경 북	1,181,811	235,637	694,609	144,915	106,650	737,217
경 남	1,421,528	221,814	880,095	15,630	303,989	921,590
제 주	283,175	34,028	206,656	51	42,440	180,291

저소득층 소비쿠폰

기초수급자이거나 법정 차상위계층이라면?
최대 52만원 상당(1인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상품권 등)을 지원합니다.

도입 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주요 내용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및 법정 차상위
- **(신청 기간)** '20. 4 ~ 7월 (4개월)
- **(지원 금액)** 40만 ~ 192만원 상당 상품권 등 (급여, 가구별 차등)

(4개월분 지급 총액 기준, 원)

수급자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 · 의료급여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주거 · 교육급여 · 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후 상품권 등 수령
  * 신청 방법, 상품권 종류 등 세부 운영사항은 시 · 군 · 구별 여건에 따라 상이

➡ 5월말 기준 96% 지급 완료(9,827억원)되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긴급 생계 · 의료 · 주거 등을 지원합니다.

도입 배경

- 실직, 휴 · 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빈곤계층으로의 추락 방지('06.3월~)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위기사유 (위기상황 해당 시 우선지원-사후조사 원칙)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356만원)
  -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요건 완화 >
  - **(재산 기준)** 재산 차감 기준 없음 → 재산 차감 기준 신설(3,500 ~ 6,900만원)
  -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공제 → 100% 공제

- **(지원 내용)** 생계지원 4인가구 123만원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 · 군 · 구청 및 읍 · 면 ·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지원 상담 시 · 군 · 구로 연계)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 · 소득 · 재산 등 확인 필요 시)

※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돌봄쿠폰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합니다(지급 완료).

도입 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돌봄쿠폰 지급 (1조500억원, 260만명)

주요 내용

- **(대상)**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대상자 (약 263.5만명)
  - '20.3월 기준 만 7세 미만에 해당하여 아동수당을 수급받는 아동
- **(내용)**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
  * ①전자바우처(카드포인트) ②지역전자화폐(모바일 · 카드) ③종이상품권(지역사랑, 온누리)

신청 방법

- **(돌봄포인트)** 대국민 안내(보도자료) → 카드변경 신청(4.6 ~10일, 복지로 · 주민센터) → 4.13일 1차 집행 등으로 9,913억원(99.3%) 지급 완료(5.19일 기준)
- **(지역상품권 · 전자화폐)** 시 · 군 · 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종이상품권은 3.30일부터 지급 시작 → 544억원(97.8%) 지급 완료(5.19일 기준)

➡ 5월말 기준 99% 지급 완료(1조457억원, 99.2%)되었고, 집행 1개월(5.15일) 내 7,330억원 소비(집행액의 74%)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라면?
전문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 자녀를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도입 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휴교 · 휴원에 따른 맞벌이 가정 등에 양육공백 발생
  -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가정의 자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 이용절차 간소화

주요 내용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휴교 · 휴원 기간 중 평일 8시 ~ 16시(시설이용시간대) 이용가구의 정부지원율 상향(5 ~ 40%)으로 이용자 부담 완화(평균 △37.6%)

< 정부지원금 상향(시간당 단가) >

구분	시간제 미취학		시간제 취학		영아종일제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85% 8,407원	90% 8,901원	75% 7,418원	90% 8,901원	80% 7,912원	90% 8,901원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55% 5,440원	60% 5,934원	20% 1,978원	60% 5,934원	60% 5,934원	60% 5,934원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15% 1,484원	50% 4,945원	15% 1,484원	50% 4,945원	15% 1,484원	50% 4,945원
라형 (중위소득 150% 초과)	-	40% 3,956원	-	40% 3,956원	-	40% 3,956원

- 신청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先이용, 後자격증빙으로 신청절차 변경
  (기존) 정부지원 소득유형 판정 후 연계(약 2주 소요) → **(변경)** 즉시 연계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전화 신청(☎1577-2514)
- **(시행 기간)** '20.3.2일 ~ 등교개학 · 개원 시(누리집 별도 게시)

※ 신청 · 문의 : 아이돌봄 고객센터 ☎1577-2514

가족돌봄휴가 + 돌봄비 지원('20년 신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급합니다.

도입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휴원 · 휴교로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돌봄 공백 발생
  - 이에 '20.1.1일부터 가족돌봄휴가(무급)*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에 제약이 따름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부담을 덜면서 자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필요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중 아래 사유 해당자

<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① 만 8세(장애인은 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 · 휴교를 실시한 경우
- 등교 개학 이후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등교 중지, 교외체험학습, 격주 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원)하지 않은 경우 포함

②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나이 무관)

③ 만 8세(장애인은 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장애인은 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는 1학기 종료 시까지 지원
- 장애인 자녀는 올해 3월 이후 만 19세가 되는 자녀도 포함('01.3.1일 이후 출생자)
-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1일당 5만원, 1인당 최대 50만원(10일)
  - 맞벌이는 부부 각각 10일 사용 가능(부부합산 시 최대 100만원)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은 2만5천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직접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 로그인(성명, 주민번호)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첨부 → 등록

* 첨부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가족관계서류, 휴가사유 증빙서류 등

  - 가족돌봄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한 후 신청 가능(신청 종료일 :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계좌 입금)

※ 신청 · 문의 : 전국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안내자료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실 → '가족돌봄비용' 검색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신설(3차 추경 신규)

휴업 · 휴직수당 先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없도록 휴업수당에 대해 융자를 지원합니다. * 3차 추경안 통과 후 시행(고시 제정 중)

도입 배경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 휴직수당 先지급이 필요*하나, 심각한 자금난으로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발생
  *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 실시(휴업 · 휴직수당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유지조치 사업장의 휴업 · 휴직수당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주요 내용

- **(개요)**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인건비(휴업 · 휴직수당 등)를 저리로 대부
  * 고용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우선 상환
- **(지원 대상)**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 내용)**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인건비(휴업 · 휴직수당)
  * **(지원한도)** 1개사당 1회 최저 1백만원 ~ 1억원(연리 1.5%, 1년 거치 일시 상환)

신청 방법

-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신청(근로복지서비스), 방문접수,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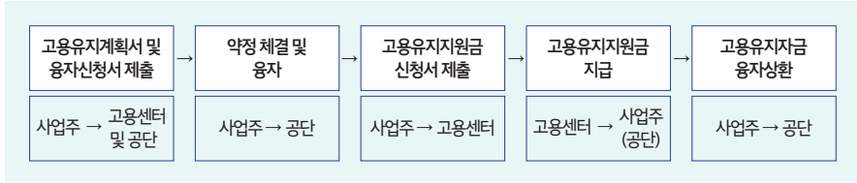

※ 신청 · 문의 : 전국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확대

코로나19로 피해가 크다면?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합니다.

도입 배경

-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 ·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 국제회의업, 공항버스는 旣지정된 여행업 등 관광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면서
  *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및 공연업은 旣지정 (3.16 ~ 9.15일)
  - 해외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

주요 내용

- **(지원 업종)**

업종	분류기준
항공기취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52939)'이나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으로 등록한 업체 • 다만,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 취급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포함)의 경우 항공기취급업에 실제 종사하는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지원 대상 * 고용유지지원금 중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항공기취급업 관련 매출액 50% 미만인 업체에서 항공기취급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 가능
면세점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면세점(47130)'이나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취득 업체
전시 · 국제회의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이나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업' 등록 업체
공항버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로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휴업 · 휴직)	지원 수준	우선지원 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 ~ 2/3		우선지원 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 ~ 3/4
	지원 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 기업 6.6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 요건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 무급휴직 실시(90일)		① 유급휴업 후 무급휴직 시행 시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유급휴업 없이 바로 무급휴직 시행 시 - 무급휴직 실시(30일)
	지원 한도	1일 6.6만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① 유급휴업 후 무급휴직 시행 시 - 일반과 동일
				② 유급휴업 없이 바로 무급휴직 시행 시 - 월 50만원
직업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 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 대상기업 300%)
		훈련비 지원 단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 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률 15 ~ 55%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률 0 ~ 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계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2천만원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 · 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체납 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체납 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국민연금보험료 (보건복지부)		체납 시 연체금 징수	체납 시 연체금 미부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명당 3만원)	면제
취업성공패키지 II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	**(임금감소 · 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0년 월 181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 ('20년 월 259만원)	**(임금감소 · 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0년 월 222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 ('20년 월 317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 / 상환 3 ~ 4년)	최대 8년(거치 1 ~ 3년 / 상환 3 ~ 5년)
	한도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5백만원	**(임금체불생계비)** 2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7백만원
	대상자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 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 적용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지원 대상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 「관광 ·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 경제 종합대책('20.2.28일)'에 따라 한시적('20.3.9 ~ 7.31일)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소득요건을 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20년 월 388만원)로 완화(임금체불생계비 제외)

[사업주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 ·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 한도** 상향 및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적용***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2/3 → 90%, 대규모 기업 : 최대 2/3 → 최대 3/4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일 6.6만 → 7만원
  - ***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지원
- **(4대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연체금 미부과 등)**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건강 ·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및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집행 유예
  - * 관광 · 공연업은 '20.3월분 ~ '20.9월분 (체납)보험료, 추가 지정된 항공기취급업 등은 '20.4월분 ~ '20.9월분 (체납)보험료가 납부기한 연장(연체금 미부과) 대상
- 이외에도,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 · 한도 상향,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등 지원

[근로자 지원]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 및 융자 소득요건 완화**
  - * 임금체불생계비 : 1천만원 → 2천만원 / 자녀학자금 : 연 5백만원 → 연 7백만원
  - ** 임금감소 · 소액생계비 : 월 181만원 → 월 222만원 / 그 외 : 월 259만원 → 월 317만원
- 아울러,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완화 · 훈련비 한도 상향,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 시 소득요건 면제 등 지원
- **(지원기간)** '20.4.27 ~ 9.1일

신청 방법

- 특별고용지원 업종 세부 지원 제도별 신청 · 문의처

지원 제도	문의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촉진장려금	
훈련연장급여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1644-8100)
4대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연체금 미부과 등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본사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과태료 면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 지원
이렇게 바뀝니다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 · 휴직) 지원 강화

지원수준 상향 (우선지원 대상기업)

'20.2.1~7.31일 한시적으로 3/4 지원

2/3 → 90%

* 대규모 기업 1/2~2/3 → 2/3~3/4

지원한도 인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6.6만원/1일 → 7만원/1일

* 대규모 기업 6.6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일반업종	특별고용지원 업종	
		공통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요건	· 유급휴업 3개월 시행 후 무급휴직(90일)	· 유급휴업 1개월 시행 후 무급휴직(30일 이상)	· 무급휴직(30일 이상)
지원한도	· 평균임금 50% 범위 내	· 일반과 동일	· 월 50만원
지원기간	· 최대 180일	· 일반과 동일	· 최대 90일

사업주 훈련지원 확대

지원한도	납부보험료의 240%	300%
지원단가	기준단가의 100%	150%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확대

기존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확대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포함

고용 · 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건강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유예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3만원/1명 면제

특별고용지원 업종 근로자 지원
이렇게 바뀝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기간 연장

최대 5년 → 최대 8년

소득요건* 완화

임금감소 · 소액생계비(만원)

월 181 → 월 222

그외(만원)

월 259 → 월 317

학자금 융자 확대

고교생 연 500만원 → 고교, 대학생 연 700만원

* 코로나19 대책에 따라 한시적('20.3.9 ~ 7.31일)으로 모든 융자 소득요건을 월 388만원으로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1천만원 → 2천만원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대상 확대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 →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강화

①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률 15~55%

→

①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률 0~20%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 요건 완화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요건 면제

훈련연장 급여 지급 요건 완화

기술자격증 소유 등 4개 요건 충족 → 직업훈련을 받으면 재취업하기 쉽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3차 추경 신규)

노사가 협력하여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에 합의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 3차 추경안 통과 후 시행(고시 제정 중)

도입 배경

- 노측은 임금감소, 사측은 고용유지 등 노사간 책임분담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자발적으로 극복하려는 사업장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도모

주요 내용

- **(개요)** 노사가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감소를 포함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부(50%) 보조
- **(지원 대상)** 올해 말까지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 협약은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이 표현된 경우 형식 · 방법 불문
  - 고용유지 기간은 '지원금 받는 기간 + 1개월(감원 방지 기간)'을 최소 기준으로, '노사 자율적으로 정한 기간'으로 정함

  ※ 자연감소(정년, 계약만료, 자발적 퇴사 등) 外 감원 불가
- **(지원 내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금감소분의 50%를 최대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원

  ※ 내부위원(청 · 지청 · 출장소장(위원장), 센터소장, 노사상생과장), 외부 전문가(교수, 노무사 등) 포함 총 5명 이상으로 구성
  - 지원금은 근로자 지원을 위한 노사가 합의한 용도로 사용
  - 유사 취지인 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

신청 방법

- 지방관서(고용센터 + 노사상생과)에 신청 → 심사위원회 결정 · 지급

청년 디지털 일자리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월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3차 추경안 통과 후 시행(고시 제정 중)

도입 배경

-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신규채용을 연기 · 중단하면서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할 우려
-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충격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여
  - 청년들에게는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신규채용 여력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

주요 내용

- 중소 · 중견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면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월 180만원 수준의 인건비 지원

  ※ **(근로시간)** 주 15~40시간 **(임금)** 최저임금 이상 지급
- 'IT 활용 가능한 직무' 관련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등 채용가능한 IT 직무를 유형화하여
  - 기업의 청년 채용에 도움을 주는 한편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유도

신청 방법

- 예산 확보 이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제3차 추경안 통과 이후 조속히 시행 예정

  ※ 사업 시행 시 보도자료, 온 · 오프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예정

청년 일경험 지원

청년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 한시적으로 최대 6개월간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3차 추경안 통과 후 시행(고시 제정 중)

도입 배경

-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신규채용을 연기 · 중단하면서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할 우려
-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충격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여
  - 청년들에게는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신규채용 여력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

주요 내용

-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에서 청년(만 15~34세)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 추가 지원
  - 청년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의 전담 멘토 지정, 업무지도 · 교육 등 내실 있는 운영 지원

  * **(근로시간)** 주 15~40시간 (임금)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인건비 지원) 40~30시간 : 80만원, 29~20시간 : 60만원, 19~15시간 : 40만원

신청 방법

- 제3차 추경안 통과 이후 조속히 시행할 예정
  * 사업 시행 시 보도자료, 온 · 오프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예정

중소 · 중견기업 채용보조금(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직한 실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실업자를 고용한 중소 · 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준비중입니다.

도입 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도모
  - 실업자를 신규채용하는 중소 · 중견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주요 내용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유형으로 조기 취업촉진을 위해 일정 지원기간 내 신규 고용 시 적용 예정이며, 세부 조건은 준비중

- **(지원 조건)**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 코로나19 확산 이후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지원 대상)** 중소 · 중견기업 사업주
- **(수혜 내용)**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월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

신청 방법

- 사업시행 공고(고용노동부 누리집 등) → 사업장의 신규 고용 → (지원요건 부합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장려금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도자료 등 사업시행 공고 예정(7월 이후, 잠정)

※ 신청 · 문의 : 전국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시중은행을 통해 소상공인 긴급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도입 배경

- **(1차 프로그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시급한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16.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초저금리(1.5%) 대출 마련
  - *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5.5조원(소진공 이관 2.0조원 포함)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7.8조원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3.1조원
- **(2차 프로그램)**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16.4조원)이 약 2개월 만에 대부분 지원 완료
  -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및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4월말~5월초 접수 종료(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한도는 5월말 현재 1.7조원이 남은 상황)
  - 다만, 여전히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

➡ 1차 프로그램 지원 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수요자 지원, 현장 중심의 신속한 집행을 중심으로 한 2차 프로그램 마련

- * 초저금리(1.5%) 지원 과정에서 시급하지 않은 자금수요에도 지원되는 문제, 소진공 중심의 대출 수요 집중에 따른 대기시간 증가 등의 문제 발생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소상공인* 대상
  - * 단, 1차 프로그램 旣수혜 업체, 정책자금 지원 대상 제외업종 업체, 세금 체납 또는 대출 연체 중인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금리] 시중금리를 반영한 3~4%대 금리(중신용도 기준) / [금액] 건당 1천만원 / [기간] 만기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지원방법)** 시중은행* 대출 + 신보 위탁보증**(95% 보증)
  - * KB, NH,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은행 + 참여 희망 지방은행
  - **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보증심사 동시 실시(단, 법인사업자는 위탁보증 대상에서 제외)

< 세부 지원 구조 >

구분		1차 프로그램				2차 프로그램
대출 공급	지원 규모	16.4조원			➡	**10조원**
		5.5조원	7.8조원	3.1조원		
	대출창구	시은	기은	소진공	➡	**시중은행** (KB · NH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은 · 대구 + 참여 희망 지방은행)
	보증지원	없음	신 · 기보 지신보 (위탁)	지신보 (위탁)	➡	**신보 위탁보증**
	보증비율	없음	100%	100%	➡	**95%**
대출 집행	지원 대상	고신용	중신용	저신용	➡	**소상공인**
	지원한도/ 금액	3,000만원	3,000만원 (지신보) 1억원 (신 · 기보)	1,000만원 (직접대출) 2,000만원 (대리대출)	➡	**건당 1,000만원**
	지원 금리	1.5% 고정금리			➡	**3~4%대 수준** (중신용도 기준)
	지원 기간 (초저금리 적용기간)	1년	3년	5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5.18(월)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사전 서류 접수 중
  - * **(오프라인)** KB · NH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대구은행 全 지점
    (온라인) KB · NH · 신한 · 우리 · 하나은행 누리집(기업 · 대구은행은 6월 중순 이후)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대출시점)** 5.25(월)부터 대출 · 보증심사 개시 →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 수령

※ 신청 · 문의 : 시중은행 고객센터

· KB국민은행 ☎1588-9999 · 신한은행 ☎1577-8000 · 하나은행 ☎1588-1111
· NH농협은행 ☎1661-3000 · 우리은행 ☎1588-5000 · IBK기업은행 ☎1588-2588
· DGB대구은행 ☎1566-5050

대출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를 지원합니다.

도입 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지원 필요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1) 코로나19로 인해 직 · 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 · 소상공인으로서
  2)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1) 피해 확인 방법

-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
  * 2019년 국세청 홈택스 자료 또는 기타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매출 기준 판단
-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 POS 자료(휴대전화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폭넓게 인정
-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2) 연체 및 휴업중인 차주중 지원 대상 추가

- '20.1~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20.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자본잠식,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는 경우

- **(적용 대상 대출)**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
  * 단, 보증기관 동의 필요

< 적용대상 대출 기준 >

- '20.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 · 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 · 통화스와프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 시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대출 >

- 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②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 · 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③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
  - 또한 이자를 선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하거나 대출기간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상품특성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내용)**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 가능

-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 포함
-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포함
-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다만,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 상담
  *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
- **(시행기간)** '20.4.1 ~ 9.30일

※ 신청 · 문의 :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전담창구 ☎1332 → 6번 선택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

피해 점포 재기 지원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 300만원의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확진자 경유 점포 300만원, 휴업점포 100만원 지급

도입 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 지원

주요 내용

- **(지원 내용)** 확진자 방문 점포(최대 3백만원, 2만8,800개), 휴업 점포(최대 1백만원, 16만 600개)의 재개장 비용 지원(총 2,470억원, 18만9,400개 점포)
  * 재개장에 소요되는 재료비, 홍보 · 마케팅비, 용역비, 공과금 등 (단, 임대료 · 인건비 제외)
- **(지원 대상)** 확진자 방문점포 및 휴업점포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사업자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유흥업, 도박업 등)

신청 방법

- 피해 소상공인 신청(시 · 군 · 구청) → 지원 대상 선정 → 재개장 비용 先지출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서, 비용지출서, 지출증빙 서류 등 제출
- 지자체별로 피해신청 · 접수 및 보조금 지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지자체 공고문 참고
  * 지자체별 사업계획 수립(4.5일~) → 피해신청 · 접수(4.13일~)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4.20일~)

※ 신청 · 문의 :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부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 수준으로 감면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도입 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금년도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주요 내용

- 연 매출액 8,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8,800만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업자 제외
  * *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 ~ 30%) × 10%]

➡ 수혜대상 총 116만명, 7,100억원 세금 감면

※ (감면 방법) '❶일반과세방식 세액 - ❷간이과세방식 세액' 감면

❶ **(일반)**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 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❷ **(간이)** 매출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5 ~ 30%) × 10%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 면제기준 : **(기존)**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
    → **(금년 한시)**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 4,800만원 사업자도 면제
    (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업자 제외)

➡ 수혜대상 총 17만명, 200억원 세금 감면

신청 방법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감면 및 납부면제 적용

※ 신청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전기요금 부담 경감

대구 · 경북에서 사업한다면?
전기요금 50% 감면 + 3개월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유예는 대구 · 경북 이외 지역도 신청 가능

도입 배경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

주요 내용

- **(전기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내용)** 6개월(4 ~ 9월 청구분)간 전기요금 50% 감면(월 최대 60만원*)
    * 전력 多소비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 설정
  - **(대상)**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 소상공인*
    *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 요금을 이미 납부하였을 경우 전기요금 감면방법

- 요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

- **(납부유예)** 소상공인 및 주택용 복지할인가구 전기요금 납부유예
  - **(내용)** 3개월분(4 ~ 6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허용
  - **(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정액복지할인 가구
    * 계약전력 20kW 이하이면 소상공인으로 간주, 계약전력 20kW 초과 시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 전기요금 납부유예 적용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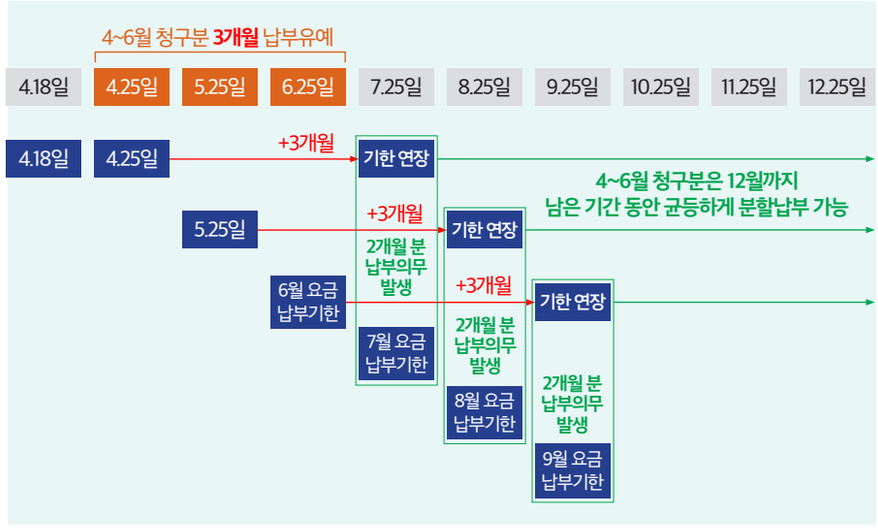

신청 방법

- **(전기요금 감면)** 신청 내용을 통해 전기요금 감면 우선 적용 후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요청
  - **(한전 계약 소상공인)**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이나 콜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신청, 사업자등록번호와 고객번호 제출 必
  - **(상가 입주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신청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하여 일괄 신청
  -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소상공인)** 대성에너지 누리집에서 접수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ki6092@korea.com) 또는 팩스(056-620-6547)로 신청,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 제출 必

- **(납부유예)**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납부유예를 우선적으로 적용
  - **(한전 요금청구서 수령 시)**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이나 콜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신청
  -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 시)** 관리사무소가 접수 후 일괄 신청
  - **(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청구서 수령 시)**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 신청 · 문의 : 전기요금 납부처(한국전력*, 관리사무소 등)
* 한국전력(cyber.kepco.co.kr, 국번없이 123)

4대보험료 부담 경감

산재보험 · 건강보험료 최대 50% 감면 및 산재보험 · 고용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30인 미만 사업장 납부유예 신청 가능

도입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계부담 경감

주요 내용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상자	• 보험료 하위 50%(특별재난지역) 40%(그 외 지역)	•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소득감소 요건 충족)	• 30인 미만 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대상	• 3 ~ 5월 부과분	• 3 ~ 5월 부과분 (~4.15일까지 신청) • 4 ~ 6월 부과분 (~5.15일까지 신청)	• 3 ~ 5월 부과분 (~5.10일까지 신청) * 단, 旣납부금액은 환급 불가	• 3~5월 부과분 (~5.10일까지 신청) * 단, 旣납부금액은 환급 불가	• 3 ~ 8월 부과분
혜택 내용	• 3개월간 50% 감면 * 특별재난지역 외 하위 20 ~ 40%는 30% 감면	• 3개월 납부예외 확대	•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6개월간 30% 감면

신청 방법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가입유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로 신청(1335)
  *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자거래(EDI)로 신청
    (지역가입자) 전화로 신청
-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소관 공단*으로 신청
  * **(부과고지 사업장)** 건강보험공단 인터넷(통합징수포털) · 우편으로 신청
    (건설 · 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방문 · 우편 · 팩스로 신청
- **(건강 · 산재보험료 감면)** 자동 적용

※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비대면 · 디지털 정부일자리

코로나19로 구직이 어려운 청년 · 취약계층에 비대면 · 디지털 공공일자리를 제공해드립니다.
* 3차 추경안 통과 후 시행(고시 제정 중)

도입 배경

-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 저하 등 고용시장의 어려움 가중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 취약계층에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필요

주요 내용

- 공공분야에서 공익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지원
  * **(대상)** 청년 · 여성, 실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IT분야는 청년 중심)
    (근로조건) 주 15 ~ 40시간(6개월 이내), 최저임금 보장, 사회보험 가입 등
- ❶ 디지털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❷ 코로나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강화로 사업을 유형화하여
  * ❶ 크라우드소싱 기반 AI 학습용 데이터 SET 구축,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DB 구축, 지역 사회적 경제 생태계자원조사 및 DB 구축 등
    ❷ 관광지 · 소규모 공연장 · 의료기관 등 방역, 지적재산권 무단사용 감시 등 온라인 모니터링
  - 청년 등 근로자에게는 일할 기회 및 더 나은 일자리로의 구직 도움을 주는 한편, 인력보강으로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3차 추경안 통과 후 고용노동부에서 6월중 통합공고 실시, 모집공고 후 7월중 사업실시 예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6개월)을 지원합니다.

도입 배경

- 우리나라 청년은 고학력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
  - ∗ 대학 진학률 : **(한국)** 69% **(경제협력개발기구)** 43%
    취업 준비생 : '05년, 35만명(청년 인구 996만 명) → '18년, 50만명(청년 인구 915만명)
    첫 취업 소요 기간 : '05년, 9.4개월 → '18년, 10.7개월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지원에 필요한 청년들의 실질적인 수요 등을 감안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❶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❷ 만 18 ~ 34세 청년 중
  ❸ 졸업 ·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 **(지원 내용)** 월 50만 원 x 6개월, 지원 중에 취업하면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지급

※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청년의 구직활동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4.1일~)

∗ **(현행)**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제한
→ **(개선)**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지원 직후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 가능

신청 방법

- **(대상선정)** 온라인 신청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 순위(졸업 후 기간, 유사사업 참여 경험)를 반영해 배정범위 안에서 예비교육 대상 선정
  - ∗ 가구소득, 졸업 후 2년 이내 여부, 구직활동계획서 등 → 구직활동계획서가 사업 목적에 맞는지 모호할 경우 심사위원회(월 1회)에 회부
  - ∗ **(구직활동 인정 범위)** 어학학원 수강, 공부 모임(그룹 스터디) 등 폭넓게 인정
- **(예비교육)** 예비교육* 진행 및 지원대상 확정
  -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 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지급)** 카드 신청 및 카드사 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 **(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은 월 1회 구직 활동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 **(전달 체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과)

※ 신청 ·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폐지되었던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50만원, 3개월)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도입 배경

-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9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30만원, 최대 3개월)되다가, '20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하반기 시행 예정이기에 폐지
-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저소득층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년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확대(+11만명, +0.13조원)

＊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月 50만원 × 3개월 구직촉진수당 지원)
저소득층 : 7 → 10만(+3만),
특고 · 프리랜서 등 특정취약계층 : 2 → 5만(+3만),
청년층 : 8 → 13만(+5만)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

  ＊ '19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에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시에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외
-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 최대 3개월
  -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으로, '19년에 비해 월 지급 금액 20만원 상향
  - 다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
- **(지급절차)** 3단계 진입 후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월 2회 구직활동 이행 시 지급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
  -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 확인후 수당 지급

  ＊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참여자 희망 시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 수립 · 이행점검은 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진행 가능

신청 방법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 >

항목	① 상호의무협약 체결 (방문, 팩스, 온라인)	② 구직활동이행결과 및 수당신청서 제출 (방문, 팩스, 온라인)	③ 구직촉진수당 지급 (수당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지급)
내용	- 구직활동이행 협약체결 - 구직활동계획 수립 (방문 및 유선상담 진행)	- 매월 구직활동내역 (2회 이상) 제출 * 필요시 증빙 서류 첨부	
방문(신청) 일자	3단계 초기상담일 (예) 1 : 1 상담	구직활동 단위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예) 1회차 : 1.1 ~ 1.31 / 2.7까지 신청 2회차 : 2.1 ~ 2.28 / 3.7까지 신청 3회차 : 3.1 ~ 3.31 / 4.7까지 신청	

※ 신청 · 문의 : 인근 고용센터 방문,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www.work.go.kr/pkg/index.do)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생계가 어려워진 특고 ·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생계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도입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많은 취업자들이 생계곤란에 직면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가능
  -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으면서 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❶ 특고 · 프리랜서 :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폭넓게 인정*

  * 교육 관련 : 방과후 교사, 학습지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 · 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 연극 · 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출 ·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 ·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❷ 영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 · 향락 · 도박업 등은 제한)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❸ 무급휴직자 :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 ①「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②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요건)** ❶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❷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 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①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② 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다만, 소득 · 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 소득수준별 구간 기준 >

- **(1구간) 가구소득이 중위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연매출 1.5억) 이하**
  → 소득 · 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
- **(2구간)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7천만원(연매출 1.5억~2억)**
  → 소득 · 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

- 소득 · 매출 감소는 '19.12~'20.1월* 대비 '20.3~4월 감소 여부로 무급휴직일수는 '20.3~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

* 방과후교사 등과 같이 동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① '20.3~4월의 전년동월('19.3~4월) 또는 ② '19.10~11월 대비로 감소 여부 판단 가능

- **(지원 내용)** 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 시급성을 고려해 1차 100만원(예비비 활용), 2차 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분할 지급*

* ①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 만큼 동시 수급 가능
  ②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旣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 지원금 신청 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직업훈련 :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 제공
  취업알선 : 고용센터(취업지원과(팀))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PC · 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프라인 신청 및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
  - **(온라인)** 별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6.1일부터 7.20일까지 신청 · 접수*(신청일 이후 2주 내 지급)

*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 검토

- **(오프라인)**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보완적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운영

*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 운영

※ 신청 ·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하반기부터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1인당 2천만 → 3천만원)가 인상됩니다.

도입 배경

- 코로나19 피해 업종 및 관련 산업 등의 휴 · 폐업 및 무급휴직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장기화
  -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영향이 집중된 숙박 · 음식, 도소매, 교육 등 서비스업 종사자 중심으로 생계 어려움 가중

  ＊ 일시휴직자수(만명, <전년동기비>) : ('20.1월)54.6<△2.9> (2월)61.8<+14.2> (3월)160.7<+126.0>

➡ 융자한도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로 지원규모 적극 확대(1.8만 → 3.8만명)

주요 내용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종전</th><th>현재
('20.12월말까지 한시적용 예정)</th></tr>
<tr><td colspan="2">융자한도</td><td>총 융자한도 2,000만원 이내</td><td>총 융자한도 3,000만원까지 확대
＊'20.7.1일부터 시행예정</td></tr>
<tr><td>소액
생계비</td><td></td><td>200만원 이내</td><td>500만원 이내</td></tr>
<tr><td>임금감소
생계비</td><td></td><td>1,000만원 이내 임금감소액</td><td>2,000만원까지 확대</td></tr>
<tr><td>임금체불
생계비</td><td></td><td>1,000만원 이내 임금체불액</td><td>2,000만원까지 확대
＊고용위기지역 등 요건 구비 시</td></tr>
<tr><td>기타</td><td colspan="3">
<table>
<tr><th>①혼례비</th><th>②의료비</th><th>③장례비</th><th>④부모요양비</th><th>⑤자녀학자금</th></tr>
<tr><td>1,250만원</td><td>1,000만원</td><td>1,000만원</td><td>1,000만원
((조)부모 1인당 연 500)</td><td>1,000만원
(1자녀당 연 500)</td></tr>
</table>
</td></tr>
<tr><td colspan="2">소득요건</td><td>3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td><td>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td></tr>
<tr><td colspan="2">융자조건</td><td colspan="2">금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td></tr>
<tr><td colspan="2">목표 지원규모</td><td colspan="2">당초 1.8만명 지원에서 3.8만명까지 지원 확대(예상)</td></tr>
</table>

- **(융자종류)** 의료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
- **(융자한도)** 2종목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융자금 총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 완화를 통한 융자대상 확대 추진
  - 임금감소생계비(1,000만 → 2,000만원), 소액생계비(200만 → 500만원) 등 세부 융자항목의 융자한도 역시 인상('20.5.1일부터)
- **(소득요건)** 중위소득 2/3 이하에서 중위소득 이하로 요건 완화
  -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88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 3인가구 중위소득(388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최근 3개월 동안 월소득이 위기 전 3개월 평균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적이 있는 근로자
  - 임금체불생계비 : 연간소득 5,7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연간소득)
- **(융자조건)** 금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다만 신용보증료 연 0.7 ~ 1% 자부담

신청 방법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대부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방 문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59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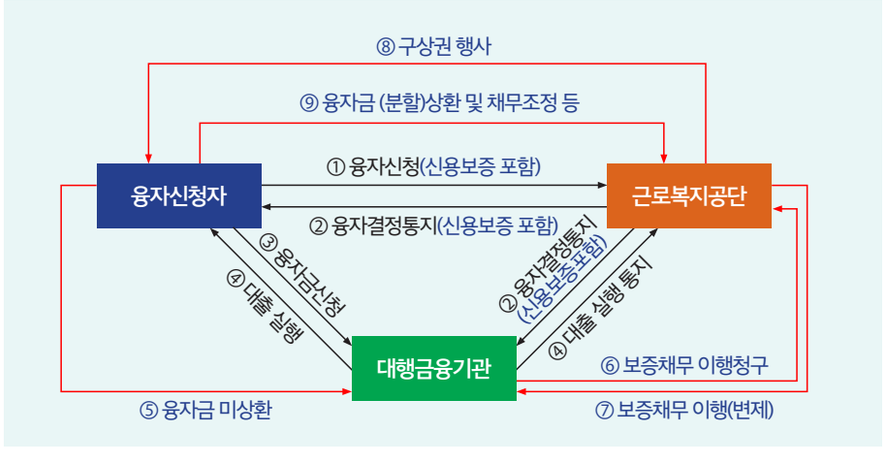

※ 신청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취약계층 등 일자리가 필요한 주민에게 지역 공공일자리 30만개를 공급하겠습니다.

도입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으로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 현실화
  *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19.4/4)42.2 ('20.1)56.8 (2)49.2 (3)△19.5 (4)△47.6
- 지역경제 위축으로 실직, 휴·폐업한 자영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소득보전 및 생계지원을 위해 공공일자리 제공 필요

주요 내용

- **(명칭)**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가칭), 희망일자리사업(약칭)
- **(시행)** 전국 지방자치단체
- **(근로조건)** 주 15 ~ 30시간 근로 원칙, 5개월 이내
- **(규모)** 참여인원 30만명, 약 1.5조원
- **(대 상)** 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기존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등)뿐만 아니라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폭넓게 참여대상 인정
- **(급여)** 시급 8,590원(최저임금), 월 67만 ~ 180만원(일 3 ~ 8시간 근무, 4대보험료 별도)
- **(사업내용)** 지역경제 회복지원 공공일자리 제공(10개 유형)

❶ **생활방역 지원**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등
❷ **골목상권·소상공인 회복 지원** : 상점가·전통시장 유통 지원, 경영 개선·소비 촉진 등
❸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 농·어가 일손 돕기, 지역 환경 정비 등
❹ **공공 휴식공간 개선** : 공원·체육시설 등 시설 개선, 관광 명소 조성 지원 등
❺ **문화·예술 환경 개선** : 문화·예술 활동 관련 인프라·환경 정비 등
❻ **긴급 공공업무 지원** : 지역 현안 수요가 있는 행정분야에 대한 지원 등
❼ **산업 밀집지역 환경정비** : 영세기업체 밀집지역 정비 등
❽ **재해예방** : 산불·풍수해 등 지역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지원 등
❾ **청년 지원** : 청년에게 한시적인 직접일자리 제공
❿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 언택트 일자리, 기타 지역 맞춤형 특화 일자리 등

신청 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워크넷에 채용공고 예정(7월중, 잠정)
- 세부사항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부서에 문의

Ⅲ

비상경제대책 쟁점과 설명

- 1차 50조 · 2차 100조 민생금융지원 대책 (1 · 2차 비상경제회의)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3차 비상경제회의)
- 수출기업 지원 및 내수 활성화 대책 (4차 비상경제회의)
-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5차 비상경제회의)

Q.1 소상공인 긴급대출 관련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엇갈리는 등 혼선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 1차 프로그램은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지원조건 상이

- 특히 개인 신용도, 기존 대출 및 보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1차 프로그램 대출 기준

구 분	대출 기준	
시중은행	· 신용등급 1~3등급 ·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 기타 은행별 심사 기준 부합 등	· 소상공인 기준 해당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미해당 * 부동산업, 금융업, 유흥업, 도박 관련 업종 등 · 1차 프로그램 旣지원자 미해당
기업은행	· 신용등급 1~6등급 · 개업 후 6개월 이상인 개인사업자 · 기존 신 · 기보 및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미보유 · 금융기관 대출 연체, 세금 체납 미해당 등	
소진공	· 신용등급 4~10등급 ·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또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 예상 업체 · '20.2.13일 이전 개업한 영리사업자 · 세금 체납, 기존 대출 연체, 휴 · 폐업 미해당 등	

□ 2차 프로그램의 경우 대출 기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구를 시중은행으로 일원화*한 단일 지원체계 운영 계획

* 시중은행(KB · NH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은 및 참여 희망 지방은행) 대출 + 신보 위탁보증(95%)

※ 다만, 시중은행별 내규에 따라 대출 기준이 다소 상이할 가능성

- 금융위 · 신보 등 관계부처 ·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

Q.2 긴급대출 승인을 받았음에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소상공인이 대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출을 받지 못한 신청건(약 9만건, 2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 5월중 시중은행으로 이관하여 최대한 조속히 대출 시행 예정
  * 소진공 대출 미처리분 2조원 규모의 시중은행 이관 · 처리를 위한 재원 소요예비비 0.2조원 旣지원(4.28일)

Q.3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는 축소하고 금리는 올린 이유는 ?

□ 1차 프로그램(16.4조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5.5조원),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7.8조원), 소진공 경영안정자금(3.1조원)

- 1.5% 초저금리 지원 등에 따른 가수요 발생으로 정작 자금지원이 시급한 실수요자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도 존재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경영애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조원 규모로 충분히 공급하되

-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1인당 한도는 1천만원으로 설정하고,
- 금리는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가수요 발생 방지
  - 이 경우에도 신보 95% 보증부 대출을 통해 일반 신용대출 대비 낮은 수준인 3~4%대 금리 적용 예정
  * (예) 대출 유형별 금리(기은, 6등급 기준) : (95% 보증부대출) 4.05% / (신용대출) 7.50%

Q.4 보증 및 대출 서류 간소화 방안은? 온라인에서 양식과 첨부파일을 채우면 한 번에 인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은?

□ **2차 프로그램에서는 신보 보증심사 업무 전체를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시중은행 방문만으로 대출 신청 가능 → 소상공인의 행정적 부담 최소화**

＊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보증심사 동시 실시

- 이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활용해 대출 신청부터 자금수령까지 이뤄지는 비대면 대출방식도 도입 예정
- 또한 시중은행 · 신보와의 협의를 통해 대출 서류 간소화* 추진

＊ 주민등록 등 · 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생략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 · 지방세 납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로 간소화

Q.5 실제 피해가 크나 올해 창업해 피해 증빙을 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 대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은?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 매출액 감소 등 피해사실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완책 마련 · 시행 중**

-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대면상담을 통해 실제 피해상황 등 파악 →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대출 지원 가능

＊ 대면 상담내용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작성 → 매출액 감소, 고객 수 감수, 영업일 · 영업시간 축소, 근로자 감원, 재고부담 등에 대해 별도의 증빙 필요 없이 신청자 본인 스스로 작성 후 제출

※ 다만, 허위 창업을 통해 대출을 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 가능한 창업 (사업자등록) 시점 일부 제한

＊ 창업(사업자등록) 시점에 따른 대출 제한 : **(소진공)** '20.2.13일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기은) 개업 후 6개월 미만 소상공인

비상경제대책 쟁점과 설명 | 1 1차 50조 · 2차 100조 민생금융지원 대책 (1 · 2차 비상경제회의)

Q.6 4대보험료 유예 및 면제 조치로 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연금 ·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및 건강 · 산재보험료 일부 감면**

□ **국민연금, 고용 ·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향후 경기가 개선되어 생계가 나아진 시점에서 유예된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 질 예정**

- 건강 ·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 일부를 한시적으로 경감해도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기금 재정이 양호한 상황

□ **기금 여유자금, 향후 보험료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납부유예 · 면제에 따른 보험재정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 현재 旣발표한 4대보험료 납부유예 및 면제 조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Q.7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 기존 및 신규 대출 부실화, 자금회전 차질로 인해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

□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가계 · 기업대출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대출규모 · 연체율 등 여신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 중

● 단, 현재로서는 금융부실 전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

❶ **(대출 구성)** 가계대출 중 고신용 · 고소득차주 대출비중이 높고, 최근 기업대출 확대는 고신용 대기업 대출이 견인 중

＊ 가계대출 중 고신용(1 ~ 3등급) · 고소득(상위 30%) 차주 74.3% · 62.9%('19.3Q) 기업대출 증가분/대기업 증가분(조원) : ('19) 44.9 /△2.4 ('20.1Q) 32.4 / 13.6

❷ **(연체율 추이)** 코로나19 영향으로 1월부터 상승세를 보였으나 3월에는 대부분 업권에서 감소세 시현

업권별 · 유형별 최근 연체율 추이 (단위 : %)

권역		'18말	'19말	'20.1말	'20.2말	'20.3말
은행	기업대출	0.53	0.45	0.51	0.54	0.49
	가계대출	0.26	0.26	0.29	0.30	0.27
저축은행	기업대출	4.19	3.95	4.28	4.35	4.31
	가계대출	4.65	3.58	3.80	3.88	3.83
카드	신용판매	0.74	0.71	0.77	0.88	0.80
	카드대출	2.44	2.29	2.45	2.69	2.34
생명보험	기업대출	0.07	0.10	0.09	0.09	0.09
	가계대출	0.58	0.61	0.62	0.62	0.61
손해보험	기업대출	0.22	0.14	0.14	0.12	0.14
	가계대출	0.58	0.51	0.60	0.58	0.49

❸ **(손실흡수능력)** BIS 비율 등 금융기관 손실흡수능력 양호

＊ BIS 비율('19말, %) : (은행) 15.25 (저축은행) 14.89 > (규제기준) 은행 10.5%, 저축은행 7%

□ 다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계소득 · 기업실적 악화 시 실물침체 → 금융불안 전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

➡ 금융기관 여신건전성 · 유동성 여건 등을 지속 점검하여 이상징후 발생 시 선제대응하여 금융부실 방지 노력 지속

Q.8 팬데믹 전염병, 대형 산불 등 대형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긴급 부조 정책이 지역 단위 혹은 전국 단위로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를 정비(금액, 지급 대상, 지급 방식 등)할 계획이 있는가?

□ ①사회재난 또는 ②자연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❶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❷ **(사회재난)**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에너지 · 통신 · 교통 · 금융 · 의료 ·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재난 발생 지자체의 행 ·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정성적 · 정무적)되는 경우 선포	· **(시 · 군 · 구)** 국고지원 기준(18억 ~ 42억원) 피해액의 2.5배(45억 ~ 105억원) 초과 · **(읍 · 면 · 동)** 4.5억 ~ 10.5억원(국고지원 기준 1/4) 초과 시 선포
주요 재정 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 국고 지원* ＊ 사망 · 실종 · 부상자 구호금 등 생활안정지원(70%), 공공시설 복구비(50 ~ 70%), 수색 · 구조(100%), 오염물 처리 · 방제(100%), 합동분향소 운영 등	지자체 부담 지방비 국고 지원* ＊ 국고 추가부담분 = (총복구비 중 지자체부담 지방비 - 선포기준액) × 국고추가지원율

□ 재난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일반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은 신중한 검토 필요

● '긴급재난지원금' 형태 지원은 시급성 · 효과성, 재정건전성 및 재원조달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필요

● 금번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비상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일회성 지원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 · 지급

Q.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기간 중 이사 또는 분가, 요양, 이혼, 별거 등 피치 못할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세대주 신청을 세대원 신청으로 변경할 용의는?

□ 2차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4.30일) 이후 5.4일(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

＊ 5.11일(월)부터는 신용 · 체크카드, 5.18일(월)부터는 선불카드 · 상품권으로 신청 · 지급

- 5.24일(일) 24시 기준, 약 2,015만 가구(대상자의 93%)가 신청하고 지원금 수령

➡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감 있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

- **블룸버그 통신, "IT 강국 한국이 서류작업 위주의 일본을 이겨" 제하 기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한국을 높이 평가(5.21일)**

  ⇒ 한국은 5.19일 기준 약 1,728만 가구(대상자의 80%)가 신청하고 지원금 수령, 4.30일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는 예산안이 통과된 일본의 경우 5.19일 기준 대상자의 19%만 지원금 수령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 마련

- 이사한 곳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사용지역 변경을 위해 지원금을 신용 · 체크카드로 신청

  ＊ 자치단체 선불카드 · 상품권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 불가
- 이혼 · 별거 등으로 세대주의 동의 ·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구원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보완

Q.10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지? 형평성 논란으로 '국민 편가르기 정책'이 됐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입장은?

□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수령

□ 자치단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국가 지원 금액만 지급

＊ 자치단체에서 이미 지급한 것을 정부 사업의 자치단체 부담분으로 인정하는 경우

＊＊ 경기도 내 29개 시 · 군(고양 · 부천을 제외한 모든 시 · 군), 전북 순창군

- 이 경우에도 국가 지원금 외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하는 금액 합산 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이상 수령

  ＊ 4인가구 기준 총 지원금(국가부담 + 지방부담) 사례
  - (A시) 총 163.1만원 : (국가) 87.1 + (ㅇㅇ도) 40 + (A시) 36
  - (B시) 총 147.1만원 : (국가) 87.1 + (ㅇㅇ도) 40 + (B시) 20

□ 국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

□ 아울러 자발적 기부제도를 함께 마련하여 각 가정의 여건에 따라 기부 또는 수령 금액을 선택하는 등 자율에 기반한 수혜금액 조정 가능

- 국민이 모아준 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결속의 계기가 될 것

Q.11 급격히 늘고 있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을 보강하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 재정여력 등 감안 시 현 시점에서 증세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증세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논의 필요

- 그간 소득세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기업 · 고소득층 위주 감면정비*를 통해 세입기반 확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배당소득증대세제 종료,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축소 등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근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

  * '20.3월까지 관리재정수지 55.3조원 적자(전년 동기 대비 30.1조원 증가)

  ** 일반정부부채('18년, GDP 대비) : 우리나라 40.1%, OECD 평균 109.2%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No. 106, '19.11월)

- 향후 증세 여부는 복지수준 확대, 지출 효율화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할 필요

Q.12 국가채무 규모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과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은?

□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 국가의 채무 수준은 경제규모, 조세 · 재정제도, 정치 · 사회적 환경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특정하기 어려움
- 대표적인 EU 재정준칙*도 적정 채무수준의 개념은 아니며, 재정준칙 도입 당시 회원국의 채무 평균값에 불과

  * **(재정적자)** GDP 대비 3% 이하 **(국가부채)** GDP 대비 60% 이하

□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은 주요국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여력이 있음

* 일반정부부채('18년, %) : **(한)** 40.1 **(미)** 106.9 **(일)** 224.1 **(독)** 70.3 **(OECD평균)** 109.2

- 국제기구, 신용평가사도 한국의 재정여력을 긍정 평가하면서 재정부양책 필요성 강조

최근 국제기구의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평가

- (IMF) 한국은 상당한 재정여력 → 확장기조 유지 권고(Surveillance Note, '20.2월)
- (Fitch) 한국은 단기 재정확대를 할 수 있는 재정여력 보유(국가신용평가보고서, '20.2월)
- (Moody's) 코로나19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음 → 국가신용등급에 영향 제한적('20.4월)
- (S&P) 수년간의 재정수지 흑자 덕분에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책 가능('20.4월)

-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수지 적자 및 채무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전 세계적 공통 현상으로 우리는 주요국 대비 전망이 양호*

  * 2차 추경 기준 : **(채무비율)** '19년, 38.1% → '20년, 41.4% (+3.3%p)
  (관리재정수지) '19년, △2.8% → '20년, △4.5% (△1.7%p)

재정건전성 전망 (IMF Fiscal Monitor, '20.4월)

(%, %p)	세계			선진국(35개국)		
	'19	'20	변화폭	'19	'20	변화폭
재정수지	△3.7	△9.9	△6.2%p	△3.0	△10.7	△7.7%p
국가채무	83.3	96.4	+13.1%p	105.2	122.4	+17.2%p

Q.13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제한돼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사용처를 제한하는 이유는?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일부 제한

- 지급수단에 따라 제한 업종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백화점 · 대형마트 · SSM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을 제한

□ 신용 ·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카드사 앱을 통해 사용 가능한 매장 검색 · 확인 가능

＊ 신한, KB국민, 비씨, 삼성, NH농협, 현대, 롯데, 하나

- '카카오맵'에서도 지원금 사용가능 가맹점 조회 서비스 개발 추진 중

Q.14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대책이 있는지?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기록

＊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 분석(5.21일)에 따르면 5월 둘째주(11~17일) 매출은 전년 5월 둘째주(13~19일) 매출과 유사

□ 다수 국민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

＊ **(리얼미터)** 여론조사(5.19일) 결과 응답자의 71.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알앤서치) 여론조사(5.11~12일) 결과 응답자의 75.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을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 배포 및 누리집 · SNS 등에서 안내

- 자치단체 특색에 맞는 '소비 촉진 캠페인' 추진 장려

＊ **(강원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추진
(서울 은평구) '가치있는 소비로 지역사회공헌', '가족과 함께', '신속한 사용'을 원칙으로 아름다운 소비 운동 추진

Q.15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깡'과 '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할 대책은?

□ 긴급재난지원금 차별거래는 처벌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시 · 도별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단속 추진

- 신용카드나 선불카드는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4~5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3~4호

- 지역사랑상품권은 근거법이 통과되어 부정유통* 행위 적발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

＊ ①가맹점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거나 ②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 이상으로 수취 · 환전한 가맹점 ③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준 환전대행점(「지역사랑상품권법」 제20조, '20.7.2일 시행)

- 또한 시 · 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기초 지자체와 연계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 지자체 주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의심가맹점을 조사하고 적발 시 가맹점 취소, 부당이익 환수 조치 등 시행

□ 개인 간 거래 및 현금화를 막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하여 거래 방지 추진

-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 징수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33조의2 제1항 제2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에 환수에 관한 유의사항 명시

- 또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개인 간 거래 방지

＊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제로페이 등) 제한 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

Q.16 코로나19 계기로 규제완화에 나선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또 정부가 정비하고자 하는 규제들은 무엇인가?

□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 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파 노력 지속중

- 단, 현재로서는 금융부실 전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

❶ 규제 패러다임을 先허용 · 後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획기적으로 전환 (567건*, '20.5월)

＊ 중앙부처 법령 235건, 자치법규 142건, 공공기관 규정 190건

❷ 新제품 · 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적 기반(4 + 1법*) 마련 및 총 246건** 사례('19년 195건, '20년 51건) 창출

＊ 정보통신법 · 산업융합법(1.17), 금융혁신법(4.1), 지역특구법(4.17) + 행정규제기본법(7.17)

＊＊ ①ICT융합 54건 ②산업융합 51건 ③금융 102건 ④규제자유특구 39건

❸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 ·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새롭게 도입('19년, 2,062건)

❹ 또한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작지만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장 규제*를 신속히 해결

＊ 현장밀착형 규제 230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240건 등

□ 코로나19로 내수 · 수출 등 경제 전반의 어려움 가중 + 디지털화 · 비대면화 등 우리 사회 · 경제적 변화 가속화 → 투자활력 제고 +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해 규제혁신 노력 강화 긴요

❶ 규제 샌드박스의 지속적 보완을 통해 新제품 · 서비스의 시장진출 가속화

❷ 새로운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등으로 지연중인 핵심규제 해결

❸ 민간 주도로 선정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新사업 모델 창출,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등 지원

＊ ①데이터 · AI ②미래차 · 모빌리티 ③의료 신기술 ④헬스케어 ⑤핀테크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 ⑧자원순환 ⑨관광 ⑩전자상거래 · 물류

□ 앞으로도 국민 · 기업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

Q.17 공공부문 업무추진비 선결제와 관련해 제기되는 담당공무원의 책임 등 문제점 지적에 대한 견해는?

□ 업무추진비 선결제 대책은 감사원과 협의하여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감사원을 포함한 전 공공부문이 적극 참여 중

□ 예산집행지침에 선지급금의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업체가 도산하는 극단적 사례를 배제하지는 못할 것

□ 다만, 이번 정책은 예산집행지침 특례 마련 등 범정부 정책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 선결제한 업체가 도산하더라도 선의의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여타 국가채권과 같이 회수 노력을 해야 할 사항

Q.18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가 한뜻으로 적극 협력

- **(산업은행법 개정안)** 발의된 지 6일 만에 본회의 의결
  - ＊ 의원입법 발의(4.23일) → 정무위 의결(4.28일) → 법사위 · 본회의 의결(4.29일)
-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5.6일 입법예고 → 5.12일 국무회의 의결

□ 향후 구조조정 실무협의체(5.12일), 경제중대본(5.21일)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방안을 논의 및 확정하고,

- 5월 중에는 기금이 정식으로 발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 추진일정(산은, 잠정)

❶ 법령(산은법 시행령) 개정 : 5.6일 금융위 입법예고 → 5.12일 국무회의 의결
❷ 산은 내규(정관, 업무방법서, 직제규정 등) 개정 : 5.8일 이사회(完), 5.12일 주주총회 의결(정관)
❸ 구조조정 실무협의체 회의(기금운용방안 논의) : 5.12일
❹ 조직개편(전담조직 신설) 확정(이사회) : 5.20일
❺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기금운영방안 확정) : 5.21일
❻ 기금 전담조직(사무국) 출범 : 5.22일
❼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완료 : 5월 4주차
❽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5월 5주차 (전반적 기금 운용계획, 채권발행 계획 등 의결)
❾ 최초 채권발행 및 자금지원 : 5월말 ~ 6월 중순 이내

Q.19 55만개 정부일자리가 단기일자리 양산이라는 지적에 대한 정부 입장은?

＊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놓은 55만개 정부일자리 중 상당수가 방역, 산불감시, 환경감시 등 비정규직인데다 근로 기간도 최대 6개월로 짧아 제2의 노인일자리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문제제기하고 정부일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여력 부족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불가피하며 정부의 당연한 책무

- 특히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휴 · 폐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확대가 필요한 상황

□ 이번 공공일자리는 전연령 대상의 공공데이터 구축 등 비대면 · 디지털 일자리 성격으로, 단순일자리 중심의 노인일자리와는 다름

- 공공·도로 데이터 구축 등 청년 중심의 IT분야 일자리*뿐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 · 환경보호 등 꼭 필요한 분야에서 발굴
  - ＊ 예시 :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사업장 조사, 시설물 안전 점검 · 진단 결과보고서 디지털화, 국내 대학 · 연구소 보유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등
- 또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는 온라인 콘텐츠 기획 · 관리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운영

□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신속히 경감하고 일경험 제공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

Q.20 '고용유지-이익공유 지원' 대책은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개입 우려가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 금번 대책은 경기침체 · 매출부진 등에 따른 고용불안이라는 위협에 대응하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 고용안정을 위한 조건 부과는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지원 시 고용유지를 최우선 조건으로 부과중

해외사례

- **(미국)**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 고용총량 90% 유지조건 부과
- **(독일)** 경제안정화기금 : 일자리 목표 설정 조건 부과

□ 한편 일시적 유동성 부족뿐 아니라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기존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출자도 고려하고 있으나

-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산은법 개정안에 명시(제29조의 4 제2항 제1호)
- 자금지원 조건으로 취득하는 기업지분은 기업가치 제고에 따른 이익을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며, 기업경영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행사되지는 않을 것임

해외사례

- **(미국)**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 대출금액의 일정 부분(예 : 1억 달러 초과 금액의 10%)을 주식연계증권 등으로 취득 → 정상화 이익 공유
- **(독일)** 경제안정화기금 : 보통주, 이익참가부사채 등을 매입하여 정상화 이익 공유

Q.21 고용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지원 저변 확대 노력 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및 고용안전망 밖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은?

□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사각지대 최소화 노력을 적극 추진중이며, 재원조달 방안, 징수체계 등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

- 향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

□ 더불어 코로나19로 일거리 · 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시행 중

-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등에 대해 고용 · 생활안정 지원*과 단기일자리** 제공

  * 월 50만원 × 2개월(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26만명 지원, 총 2,007억원)

  ** 사업장 방역 지원인력, 전통시장 택배 지원인력 등(9개 지자체, 6천명, 총 337억원)

-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특고 · 프리랜서 등의 생계안정 지원

  * 타 직업으로 전환하려 하지 않더라도 종사분야 전문성 향상, 안정적 수입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50만원 × 3개월)

  ** **(기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등 요건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
  → **(변경)** 무급휴직자, 특고 등까지 한시적 확대(월평균 65만원 × 최대 6개월 지원)

-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경감*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요건 완화**

  *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 경감 + 3개월간 산재보험료 납부유예

  ** 특고는 소득과 무관하게 무담보 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3천만원 융자지원

□ 이에 더해 기존의 고용안정 지원을 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 특고 · 프리랜서 지원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

* 월 50만원 × 3개월('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93만명 지원, 총 1.5조원)

참고 자료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 한국판 뉴딜 주요 과제
- 코로나19 관련 누리집

목표

코로나19 국난 극복 +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3 + 3 정책방향

코로나19 국난 극복

1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

❶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지속
❷ 자영업자 · 소상공인 생존 지원
❸ 위기 · 한계기업 보호
❹ 고용유지 및 안정화

2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❶ 소비 진작 및 관광 회복
❷ 대대적 투자 활성화
❸ 수출력 견지 및 보강
❹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

3 방역, 대외신인도, 금융,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❶ 철저한 방역리스크 관리와 국제공조 ❷ 국내외 경제 · 통상리스크 최소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4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

❶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❷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
❸ 유턴 · 첨단산업 유치 등 GVC 허브화

5 산업 ·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

❶ 벤처 · 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
❷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
❸ 구조변화에 대응한 경제체질 강화

6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

❶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
❷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
❸ 포용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❹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활성화

'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설정한 혁신 · 포용 · 공정 · 상생의 가치 지속 확산

재정의 적극적인 뒷받침 | 경제 · 사회 구조혁신 | 고강도 규제개혁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3차 추경 규모

총 35.3조원 (세입경정 11.4조원 + 세출확대 23.9조원)

3차 추경 포함 시 코로나19 대응 정책 패키지 270조원 수준

세입경정 11.4조원

• 세수 감소분 보전 및 세제감면 뒷받침

135조 + α 금융패키지 재정지원 5.0조원

소상공인, 중소 · 중견기업 긴급자금 1조 9천억원

• 소상공인 2단계 자금공급 프로그램, 중소 · 중견기업 정책자금 지원

주력산업 · 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3조 1천억원

• 채권 · 증권안정펀드 조성, 비우량 회사채 · CP 등 매입기구 설립, 코로나 P-CBO 등

고용 · 사회안전망 확충 9.4조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소요 뒷받침 8조 9천억원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설, 55만개 + α 직접일자리, 구직급여 등 실업자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5천억원

• 긴급복지 지원 확대, 청년 · 근로자 햇살론 추가 공급, 다자녀가구 ·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추가 공급

경기보강 패키지 11.3조원

내수 · 수출 · 지역경제 활성화 3조 7천억원

•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 지역사랑 · 온누리상품권 확대 유턴 · 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 중기 · 소상공인 회복지원

한국판 뉴딜 5조 1천억원

디지털 뉴딜
① D · N · A 생태계 강화
②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③ 비대면 산업 육성
④ SOC 디지털화

그린 뉴딜
① 도시 · 공간 ·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②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③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고용안전망 강화

•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K-방역 및 재난대응 2조 5천억원

• K-방역 고도화 · 산업화 · 세계화
재난 대응시스템 : 사업장 안전 빅데이터, 화재예방설비, 화학물질관리

* '한국판 뉴딜'과 타 과제(고용안정 특별대책 및 K-방역 등)간 중복 : 약 1.8조원

재원조달

1 지출 구조조정	2 기금 자체재원 활용	3 국채발행
10.1조원	1.4조원	23.8조원

한국판 뉴딜 25개 과제 5.1조원

'22년까지 총 31.3조원 수준 투자

디지털 뉴딜 2조7천억원

'22년까지 총 13.4조원 수준 투자

1 D·N·A 생태계 강화 1조3천억원

①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② 5G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③ 1·2·3차 전산업 5G·AI 융합 확산
④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2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1천4백억원

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공공시설 WiFi 구축
⑥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3 비대면 산업 육성 7천5백억원

⑦ 전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⑧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⑨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⑩ 중소기업 16만개에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4 SOC 디지털화 4천8백억원

⑪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
⑫ 도시·산단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

그린 뉴딜 1조4천억원

'22년까지 총 12.9조원 수준 투자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3천7백억원

⑬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⑭ 스마트 그린도시 선도프로젝트 100
⑮ ICT 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2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4천8백억원

⑯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⑰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3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5천8백억원

⑱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⑲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⑳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

고용안전망 강화 1조원

'22년까지 총 5조원 수준 투자

㉑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㉒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㉓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㉔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㉕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정책브리핑 포커스

코로나19 관련 정책뉴스, 카드뉴스, 동영상 등 대국민 소통 콘텐츠 제공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코로나19 관련 정책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백과사전형으로 친절하게 설명

기획재정부 '한눈에보는 경제' 마이크로페이지

비상경제회의, 추가경정예산,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코로나19 관련 경제지원대책 총망라

교육부

코로나19 관련 교육분야 현황 정보, 학교 방역 참고자료, 등교 · 원격수업 정보 등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개발, 과학기술 동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선지원 사업 등 정보 제공

외교부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및 금지 국가, 각국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등 안내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대책,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등 소개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보도자료, 긴급지원대책, #덕분에 캠페인 등 소개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환자 현황, 국내 · 국외 · 시도별 발생 현황, 피해지원 정책 등을 종합 안내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정례브리핑,
국가별질병정보 등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

아리랑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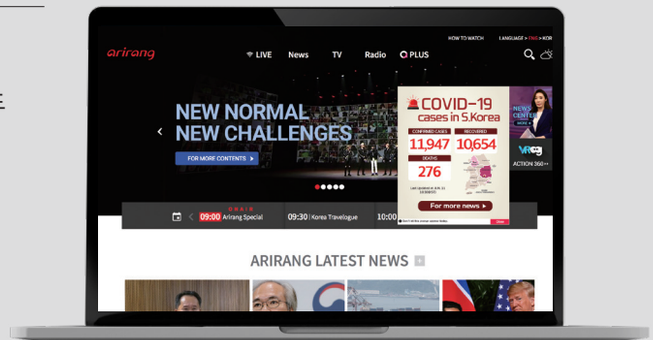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해외 시청자들에게 외국어로 실시간 보도